

약관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: SH 명품 연금저축 글로벌 ETF 재간접투자신탁 1 호
 SH 명품 장기주택마련저축 글로벌 ETF 재간접투자신탁 1 호
 SH 신흥시장 로컬채권 재간접 모두투자신탁

2. 시행일 : 2008. 7. 21.

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- ◇ 변경 사유 : 장외파생상품 투자한도 산정 기준을 위험평가액으로 변경
- ◇ 변경 대비표

(1) SH 명품 연금저축 글로벌 ETF 재간접투자신탁 1 호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생략) 1~6.(생략) 7. 지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	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현행과 같음) 1~6.(현행과 같음) 7. 지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이에 따른 위험평가액[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'위험평가액'이라 한다]</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
<p>②(생략) <부칙 신설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 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8 년 7 월 21 일 부터 시행한다.</p>

(2) SH 명품 장기주택마련저축 글로벌 ETF 재간접투자신탁 1 호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생략) 1~6.(생략)</p>	<p>제 37 조(투자한도) ①(현행과 같음) 1~6.(현행과 같음)</p>

<p>7. 지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7. 지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이에 따른 위험평가액[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'위험평가액'이라 한다]</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부칙 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

(3) SH 신흥시장 로컬채권 재간접 모투자신탁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제 37 조(투자한도)</p> <p>①(생략)</p> <p>1~7.(생략)</p> <p>8.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및 지수관련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9~10.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 37 조(투자한도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~7.(현행과 같음)</p> <p>8.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및 지수관련장외파생상품에의 투자는 <u>이에 따른 위험평가액[투자신탁의 설정일로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매 1월이 되는 날 전에 이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 이하 '위험평가액'이라 한다]</u>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이하가 되도록 한다.</p> <p>9~10.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부칙 신설>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8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.</p>